

국가인권위원회 법안 비교(II)

(법무부수정안, 국민회의안 비교검토)

1999. 9.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

법 체 계 비 교

장 별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명 칭	인권법 (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안)	
제1장(총칙)	제 1조 ~ 제 4조 목적, 정의, 기본방침 적용범위	제 1조 ~ 제 3조 목적, 정의, 위원회의 독립성	
제2장	제 5조 ~ 제 7조 국가기관의 인권보장의무와 역할	제 4조 ~ 제 21조 위원회의 구성	법무부안의 경우 제2장에서 국가기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함
제3장	제 8조 ~ 제 10조 차별행위의 금지	제 22조 ~ 제 32조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법무부안의 경우 제3장에서 차별행위 금지를 규정 국민회의안의 경우 업무와 권한을 제3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제4장	제 11조 ~ 제 39조 제1절 설립 및 의무 제2절 조직 및 운영 제3절 국가의 지원 등	제 33조 ~ 제 52조 인권침해의 조사와 처리	
제5장	제 40조 ~ 제 67조 조사와 구제의 절차	제 53조 ~ 제 56조 보칙 (위원회의 책임면제, 단체와 협력,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6장	제 68조 ~ 제 75조 벌칙	제 57조 ~ 제 59조 벌칙 과태료 고발 및 징계요구	
부 칙	제 1조 ~ 제 3조 시행일 설립준비 인권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 1조 ~ 제 4조 시행일 최초 인권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계획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제기 기간 특례	국민회의안의 경우 과거인권 침해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진정의 경우 진정제기 기간 특례 규정함

세 부 항 목 별 비 교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목 적	제1조(목적) 이 법은.....인권침해를 방지, 구제하고 인권의 식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의	제3조(정의) ① 인권의 정의 ② 교정기관 ③ 조사기관 등 직원 ④ 다수인 보호시설 ⑤ 구금 보호시설	제3조(정의) ① 인권의 정의 ② 구금보호 시설 ③ 다수인 보호시설 ④ 시설수용자 ⑤ 관계기관 등 ⑥ 당사자 ⑦ 관계인 ⑧ 소속기관 등	
기본방침 (위원회의 독립성)	제2조(기본방침) ① 인권법의 기본방침 및 국가의 책임규명 ② 국가인권위원회 책임 제12조(독립성)	제2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업무와 재정적 독립.....신분도 보장되어야 한다.	당안의 경우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국가 기관으로 부서의 독립성을 명시함 법무부안의 경우 국가기관의 기본방침 과 위원회의 감시·보완의무 규정, 제12 조에서 독립성 명시
국가기관의 의무	제5조(국가기관의 의무) 제6조(법무부의 역할) 법무부 장관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역할)	규정없음	법무부 수정안은 제6조에서 법무부장관 의 역할을 명시함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차 별 행 위</p>	<p>제8조(차별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인종, 피부색, 출신학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의 상황, 정치적 견해,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에 기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p> <p>제9조(인종차별)</p> <p>제10조(성희롱)</p>	<p>제4장 제33조(진정)</p> <p>②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면되거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병력 또는 달리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그밖에 정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차별행위로 본다.</p>	<p>국민회의안의 경우 성적지향, 병력, 불리한 대우, 굴욕감, 정신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포함한 차별행위의 규정</p> <p>법무부의 경우 차별행위 금지의 범위를 제한 함.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함</p>
<p style="text-align: center;">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p>	<p>제15장 제4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호 수사기관 또는 다수인 보호시설 직원의 인권침해행위 유형 명시 ㉗~㉛ 4.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행위</p>	<p>제4장 제33조(위원회의 조사대상)</p> <p>① 조항에 행위 명시</p> <p>1. 공권력에 의한 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 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한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p> <p>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p> <p>② 차별행위 규정</p>	<p>국민회의안은 제4장에서 인권기준 따로 정함. 공권력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행위도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규정</p> <p>법무부안은 차별행위 등 규정은 제3장에 명시, 수사기관 또는 다수인 보호시설 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유형 명시</p>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및 지위	<p>제4장(국민인권위원회)</p> <p>제11조(설립)</p> <p>제13조(사무소) ②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38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위원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매년 보조금예산요구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명칭 : 국가인권위원회</p> <p>제18조(보조금) ① 국가는.....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보조금 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7조(사무소) ①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p>	<p>당안과 법무부안 모두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였으나 보조금 요구서에 대한 제출을 당의 경우 국무총리로 법무부의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p>
위원회 업무	<p>제16조(업무) 제1호~제13호 제13호, 제1호 내지 제12호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p>	<p>제3장</p> <p>제22조(업무) 제1호~제10호 기타인권보장 및 향상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동일</p>
국가기관의 협의 의무	<p>제18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제23조(국가기관의 협의 의무) 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국민회의안은 국가기관 협의 의무규정 법무부안은 성실히 응해야한다고 함으로써 기관자체의 판단에 맡김</p>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시 정 권 고</p>	<p>제19조(권고 등의 상대방 및 권고에 대한 존중의무) ①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표명을.....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p> <p>제51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다음 각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48시간 이내에 그 조치결과나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8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회에 자문 또는 조력을 요청 할 수 있다. ④이유를 위원회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장이 설명한 이유를 공표할 수 있다</p> <p>제45조(임시조치 등) ②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한다.</p>	<p>국민회의안은 권고에 대해 이행계획 등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문서로 통보의무 규정하고 위원회가 공표 할 수 있게 함</p> <p>법무부안의 경우 위원회 의견, 권고에 대해 국가기관의 존중의무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 및 보고서 작성</p>	<p>제20조(연례보고서 등의 제출) ① 위원회는.....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례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p> <p>제19조(법원 및 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②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24조(국제기구에 의견 제출) 국제기구에 위원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p> <p>제31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요청이 없는 경우에도.....허가를 얻어 계속중인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32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위원회는.....활동내용과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보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기관의장은 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조치사항과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에 의안의 제출을 건의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공개하여야한다. 다만.....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국민회의안의 경우 제24조에서 국제기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제32조에서 국무총리를 통해 국무회의에 의안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p>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p>시설의 방문 및 조사(사찰)</p>	<p>제 18조(구금·보호시설의 사찰) ① 위원회는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인권위원으로 하여금.....사찰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위임할 수 있다. ②수용자나 피보호자를 면담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③사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증표를 지니고...내보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개선이 필요한.....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사전에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사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48조(조사의 한계와 사실조회) ①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내용의.....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 25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에 관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 등은 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안의 경우 제 18조에서 제 48조에서 조사의 한계를 규정함</p> <p>제 28조(시설의 방문 및 조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권위원으로.....방문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때.....공무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증표를.....제시하여야 한다.....시설의 장은 즉시.....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시설의 모든 장소와 자료 등에 접근할 수 있다. ⑤수용자와 면담할 수 있고서면으로.....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이때 장에게...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⑥ 인권위원은.....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영치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38조(조사의 방법) ⑧ 위원회가.....중안 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그에 대한 검증·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p>	<p>국민회의안의 경우 자료제출 출석요구, 방문조사, 자료접근, 시설 및 장소접근, 자료영치 등에 대해 대상기관의 의무를 규정. 또한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함. 제 38조에서 자료제출 거부 요건 명시</p>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공 청 회 인 권 교 육 과 홍 보 인 권 자 료 실 등</p>	<p>제7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역할) ② 교육부 장관은.....노력하여야 한다.</p> <p>제29조의 1(인권자료실) ③도서관으로 본다.</p>	<p>제27조(공청회) ①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 또는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9조(인권교육과 홍보) ② 교육부장관은...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시험, 연구.....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교육내용에.....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내용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제30조(인권자료실) ③ 인권자료실은.....도서관으로 본다</p>	<p>국민회의안의 경우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 포함 의무로 함</p> <p>법무부안의 경우 공청회 등의 규정없음</p> <p>법무부안의 경우 제6조 행정기관의 역할에서 노력하여야 한대로 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회 구성</p>	<p>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9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상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자를.....임명한다. ④ 위원의 보수와 예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9인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며.....</p> <p>제9조(위원의 보수와 예우) 위원의 보수와 예우에.....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당안과 법무부안 모두 동일, 위원의 예우와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p>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위원의 임기	<p>제2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p> <p>부칙 제3조(인권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의 설립당시 위원 중 상임위원1인과 비상임 위원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인권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p> <p>부칙 제2조(최초 인권위원의 임기) 이번에 의하여.....인권위원 중 4명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여 임명한다</p>	동일
위원장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임명과 직무)	동일
신분보장	제2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겸직금지	제25조(위원의 결격사유)	<p>제8조(겸직 등의 금지) ①항</p>	동일
전체위원회	<p>제27조(회의의사 및 의사 종족수) ①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1조(회의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③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④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p>	동일
소위원회	<p>제2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상임위원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p>	<p>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법무부안의 경우 소위원회가 의결할 사항 구체적 명시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의사의 공개	조항없음	제 12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필요하 고 인정.....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사 무 처	제 29조(사무처의 설치) ③ 사무총장과 직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14조(사무처) ② 사무처에.....사무총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총장 및 소속 직원의 보수는.....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공무원 의제	제 73조(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 74조(정치관계 금지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 제)	제 56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의 파견	제 3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 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위원회와 협의하 여.....파견 할 수 있다.	제 5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등의 장은...파견할 수 있다.	동일
징계 위원회	제 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 1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동일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자 문 기 구	조항없음	제 13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인권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직 원 의 신 분 보 장	제31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면직되지 아니한다.	제 16조(직원의 신분보장)	동일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32조(자격사칭의 금지 등) 제3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 19조(자격사칭의 금지) 제2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동일
비밀 준수 의무	제33조(비밀 누설의 금지) ②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비밀준수의무)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일
조사대상	제4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가~아 4. 차별행위	제33조(진정) ① 1.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8조 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한 인권을 침해할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성별, 종교.....차별행위로 본다.	조사대상범위 국민회의안 : 헌법, 국제규약, 차별행위 법무부안 : 수사기관 및 다수인 보호시설의 구체적 침해행위, 차별행위
진정방식	제42조(진정의 방식)문서로 진정하여야 한다. 다만.....구술로 진정할 수 있다. 1, 2, 3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수용자 진정	제43조(구금, 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진정권 보장) ①진정서 작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4조(시설수용자의 진정) ①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진정 각하 및 조사 개시	제44조(진정의 각하) 제45조(조사의 개시) 제46조(조사의 목적)	제35조(진정의 각하와 조사의 개시 등)	
진정 조사방법	제47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5 제48조(조사의 한계와 사실조회) ① 위원회가.....관계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실지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중앙국가 기관의 장으로부터.....내용의 확인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때에는.....실지조사를 할 수 없다. 1.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된 경우 2. 수사, 재판, 형집행에 관한 자료나 물건으로서 공개하면 중대한 지장, 안전을 해할, 수사방법상의 기밀누설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관계 국가기관에.....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1조(조사의 중지)	제38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조사할 수 있다. 1.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2.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영치 4. 당사자,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신문 ⑤ 검증, 증인,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인사소송법 제3장 제2, 3, 5, 6절을 준용한다. 다만, 구인에 관한 절차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⑧ 위원회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국가기밀사항인 경우.....국가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제출, 접근, 검증, 감정 등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국민회의안의 경우 당사자 출석요구에 주안점이 있고 증인, 감정인에 대한 신문 등 가능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자료제출 및 접근, 검증, 감정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안의 경우 진술서 제출요구 등 서면조사에 주안점이 있음. 단, 필요한 경우 출석요구, 현장조사 등 가능 진행 계속중인 범죄수사, 재판에 중대한 지장 초래를 우려한 경우와 사건 관계인의 명예, 비밀,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지조사를 할 수 없음.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진정이송	제49조(진정의 이송)	제36조(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② 다른 법률에 따라.....시효를 계산하는 경우진정이 제출된 때에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임시조치 및 긴급구제	제51조(긴급구제조치 권고) ① 위원회는.....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중에 있 다는.....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권고 받은 단체의 장은.....존중하여야 한 다. ③48시간 이내에 조치결과나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임시조치 등) ① 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를.....그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보호하는데 필요한.....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등의 장은.....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국민회의안의 경우 임시구제 조치에 대하여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사 항이며 이를 기한내에 이행의무 법무부안의 경우 긴급구제 조치에 대 하여 소속·감독기관 단체장에게 권고 사항이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 48시간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의 무
인권위원 제척	제2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9조(위원의 제척 등)	동일
합의 권고	제52조(합의 권고)	제41조(합의의 권고)	
조 정	제53조(조정절차의 개시) 제54조(조정)	제42조(조정)	
조정효력	제55조(조정의 효력)	제43조(조정의 효력)	법무부, 국민회의 모두 재판상의 화해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조정위원회 설치	조항없음	제44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법률구조	제56조(법률구조)	제46조(피해자를 위한 소의 제기) 제50조(법률구조)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구제조치 권고	제57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권고를 받은.....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7조(소속기관 등에 대한 권고) ① 위원회가.....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회의안의 경우 이행의무 및 이행 계획 제출의무 법무부안의 경우 권고에 대한 존중의만을 규정
진정기각	제58조(진정의 기각)	제39조(진정의 기각)	
고 발	제59조(고발 및 수사의뢰)	제48조(피진정인에 대한 조치) 제37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국민회의안의 경우 위원회 이름으로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의견진술	제60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49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결정통지	제61조(결정의 통지)		
조사 비공개	제62조(조사 등의 비공개)	제51조(조사와 조정의 비공개)	
권고등 공표	제63조(권고 등의 공표)	제52조(처리결과의 공개)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조치결과 통보	제64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준용규정	제66조(직권조사의 경우 준용규정)	규정없음	
관련기관등 협력		제55조(위원회와 민간단체의 협력)	
벌 칙	<p>제68조(인권옹호 업무방해) 다음 각조의 1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업무상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케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 예로써.....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p> <p>제69조(허위진정) 허위사실을.....진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70조(진정서 작성 등 방해)700만원 이하의 벌금.....</p> <p>제71조(인권위원 등 자격사칭)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p> <p>제72조(비밀누설)누설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p>	<p>제57조(벌칙)</p> <p>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1.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제출을 허가하지 않은 자 2. 위원회의 시설방문 및 조사를 방해·거부한 자 3.허위의 증언, 감정을 한 자 4.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불이익을 준 자</p> <p>②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1. 위원회위원 또는 직원이 업무상 비밀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 2.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비밀을 침해한 자 3. 시설수용자의 진정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은 자 4. 위원회에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자 5. 위원회의 임시조치를 방해·거부한 자</p> <p>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자격을 사칭한 자 2.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3.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p>	

항 목	법무부 수정 (안)	국민회의 (안)	비 고
과 태 료	제75조(과태료) ①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1.사찰을 거부·방해 도는 기피한 자 2.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자 4.실지도사를 거부·방해한 자 ② 수용자 진정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58조(과태료) ①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당안의 벌칙으로 처벌할 조항이 법무부안의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약하게 규정됨